



- ◆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080100521
-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8. 9. 30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 10. 24.

메 리 디 움

정 보 공 개 서

(주)보화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보 화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717(인계동)
- ◆ 대표전화 : 031-238-6002
- ◆ 팩 스 : 031-238-6003
-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부 031-238-600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기 업 이 념 ■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제품, 차별화된 디자인, 창의적인 경영, 이외에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경영철학으로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합니다.

"집에는 구급속을 재빨리 뛰어간다"는 모토를 가지고 시시한 확보하는 우선 출세시장을 공략하여, 구급속 제품에서 선의의 경쟁자인 승리의 기치를 제정전하고, 동시에 5년 계획전략을 세우는 사업전략이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구급속이 수많은 시계수의 제품을 지구구급 업체 고객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고객중심의 권위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업체로 경쟁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급속 시장이 점차 서편화 도래하고 금강산성 및 기타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급속과 선의의 경쟁자를 활용하여 대처하는 경쟁력, 품질의 보다는 윤리나 실용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대처하는 요소를 중점의 시장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5년 안에 최고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완벽한 품질로의 경쟁 승부 BEDIKA-형의인, 독점성을 갖추고 보편에 앞서 일하는 BEDIKA-임을 추구 고전하고 국내 구급속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국내 경쟁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로 발전을 하기 위해, 국민소득고민 달력을 달성한 선진국으로써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최우선 목표를 달성 해쳐줄 공구해야 할 것이며, 이 결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공구에 한시정신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브랜디에트 등을 구축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발전에 따른 상위 리더십이 중요한 때입니다.

고객의 열기 해결하는 실용적으로 역 30년의 세월 동안 헌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신이 안주하지 않고 살기위하는 눈을 뜨게 할려면 하는 기쁨과 부사처럼 몸으로 증명하도 으르려 한 분야에 헌신하겠다는 것으로 결심해 달라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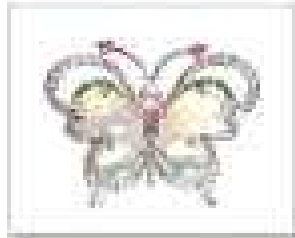
▣ 브랜드 소개 ▣

"최고의 품질, Minimalist의 미학을 담아"



Time Jewelry

- 다양한 디자인의 시계, 이어 액세서리 판매
- 다양한 컬러 세팅의 다양한 시계와 세팅 액세서리
-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화제가 되었던 다양한 디자인의 시계와 액세서리
- 다양한 컬러의 다양한 액세서리 판매



Stone & Quartz Jewelry

- Stone & Quartz Jewelry를 판매한 다양한 브랜드
-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다양한 시계와 액세서리
-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다양한 시계와 액세서리
-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화제가 되었던 다양한 디자인의 시계와 액세서리



Diamond & Gemstone Jewelry

- 다양한 디자인의 다양한 시계와 액세서리
-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다양한 시계와 액세서리
-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다양한 시계와 액세서리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 용 브 랜 드	주 소			
(주) 보 화	『메리디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717(인계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6.17	2009.6.19	최 월 선	031-238-6002	031-238-6003
	법인등록번호	135811-0167271	사업자등록번호	135-86-0304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상호/이름	사 용 브 랜 드	주 소		
대 표 이 사	최 월 선	『메리디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717(인계동)		
	사업(경영)기간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 1. 15. ~ 현재		최 월 선	031-238-6002	031-238-6003

관 계	상호	사 용 브 랜 드	주 소		
계 열 회 사	(주)보화스위스	『스위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718 (인계동, 삼호파크타워)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 판 근	031-238-6002	031-238-6003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35811-0232610		124-87-41633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메리디움』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메리디움』	
상 호	『메리디움』 000점	점명은 개점 전까지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맹점주가 결정하여 가맹본부에 통보하게 됩니다.
서비스표		출원번호 : 41-2008-0003789 등록번호 : 41-0178044-0000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직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86,804	38,104	448,699	1,143,050	-33,174	-23,996
2022년	520,489	57,871	462,618	1,155,379	-54,129	13,918
2023년	554,916	92,910	462,005	1,170,600	-736	-612

※ 근거자료로 재무제표가 (* 별지 1)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 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 당 업 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최월선	대표이사	2023. 1. 1. ~ 현재	(주)보화 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감사	2013. 6. 25. ~ 현재	(주)보화스위스 감사	감 사 업 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 원 수 (명)		직 원 수 (명)
	상 근	비 상 근	
2023년 12월 31일	1	-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 호	구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계열회사	(주) 보화스위스	가맹사업 경영	2013. 6. 25. ~ 현재	스위스(등록번호 : 20120100586)라는 영업표지의 순금 매입 및 판매 / 시계수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명 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등록일자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메리디움 Meridium	서비스표	2008.02.15 2008.12.03	41-2008-0003789 41-0178044-0000	박준환	2028.12.03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7년 2월 15일

2. 『메리디움』연혁

상 호	영업표지	대 표	경 영 기 간	주 소
(주)보화	『메리디움』	이 상 준	2007. 2. 15~2009. 6. 1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717(인계동)
		박 준 환	2009. 6. 17~ 2018. 1. 15	
		박 하 나	2018. 1. 15 ~ 2023. 1. 1	
		최 월 선	2023. 1. 1 ~ 현재	

3. 『메리디움』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메리디움』	의류/패션	준보석(18k, 14k) 등 주얼리 판매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증인 『메리디움』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10	10	-	10	10	-	10	10	-
서 울	3	3	-	3	3	-	3	3	-
부 산	-	-	-	-	-	-	-	-	-
대 구	-	-	-	-	-	-	-	-	-
인 천	1	1	-	1	1	-	1	1	-
광 주	-	-	-	-	-	-	-	-	-
대 전	1	1	-	1	1	-	1	1	-
울 산	-	-	-	-	-	-	-	-	-
세 종	-	-	-	-	-	-	-	-	-
경 기	5	5	-	5	5	-	5	5	-
강 원	-	-	-	-	-	-	-	-	-
충 북	-	-	-	-	-	-	-	-	-
충 남	-	-	-	-	-	-	-	-	-
전 북	-	-	-	-	-	-	-	-	-
전 남	-	-	-	-	-	-	-	-	-
경 북	-	-	-	-	-	-	-	-	-
경 남	-	-	-	-	-	-	-	-	-
제 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메리디움』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증감
2021	11	-	-	1	1	10	-1
2022	10	-	-	-	-	10	-
2023	10	-	-	-	-	10	-

6. 『메리디움』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의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직전 3년 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 / 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계열회사	(주)보화스위스	스위스	20120100586	도/소매업 (순금 매입 및 판매 / 시계수리업)	36 / 0	35 / 0	35 / 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평균 매출액(단위: 천원, VAT미포함)						비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0	166,910	45,092	298,116	149,058	26,315	6,578	9곳 산정
서울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	-	-	-	-	-	-
대전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5	해당없음	-	-	-	-	-	산정가능점포 5곳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위 연간평균매출액은 2023년 12월 기준 당사 10개 가맹점 중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1개 가맹점(진접점)을 제외한 총 9개 가맹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근거로 산정되었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비치된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사업연도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0곳	4539일

상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입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메리디움』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메리디움의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고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10. 광고 및 판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e-비즈니스 사업단	서울시 중구 세현동 1가 230번지	02-2002-5636

귀하는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일 날 예치가맹금을 [우리은행]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보화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

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최초 가맹금

귀하가 부담해야 할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 액	지 급 기 한
가 맹 비	0 ~ 33,000	계약 체결일
교 육 비	무 료	
총 계	0 ~ 33,000	
반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가 계약체결 후 (7일)전에 계약을 해제의 경우 : 귀하는 당사에 가맹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조) 	
반환될 수 없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의 만료 	

※ 참조-가맹금의 반환사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귀하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귀하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당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귀하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당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귀하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5.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귀하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가 귀하에게 도달된 날부터 귀하가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6.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귀하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귀하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로부터 귀하가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보증금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 분	금 액(단위: 천원, VAT 포함)	총 계
가 맹 비	0 ~ 33,000	0 ~ 3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16.5m² 기준, 단위: 천원, VAT 포함)

구 분	지 급 대 상	금 액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 고
인테리어	내 장	19,800	3,960	분납제도 (p.17)참조	공사 전 계약 취소	16.5m ² 기준 - LED에폭시 전면 발광타입, 높이 200~250mm*20~30T - 글씨 1자당 250,000~300,000원 - 매장에 따라 사이즈 및 설치비 달라질 수 있음. - 지정업체 선정 중
	외 장 (간판)	1,000 ~ 1,200	-			
초도물품대금		16,500	3,300	영업 개시 2일 전까지	상품 미공급시	
	가맹점사업자 직접구매	71,500	-	-	-	가맹점 사업자가 구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당사가 직접 검수
총 계		108,800 ~ 109,000				(3.3m ² 당) 21,760 ~ 21,800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면적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 |
|---|
| ① 가맹점 입점이 가능한 마트를 당사의 담당자가 상담을 통하여 제시합니다.
② 귀하와 당사가 협의하여 귀하가 그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합니다. |
|---|

영업지역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① 계약·채용 기준

귀하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영업개시 전까지 해당 인력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의 종업원에 대한 계약·채용 기준에 대해 필요한 조건 및 특별한 제한을 귀하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1. 당사는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귀하 또는 그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은 영업개시 전의 신규교육과 영업개시 후의 정기교육, 비정기교육으로 구분합니다.
2. 제1항의 신규교육은 입점하는 마트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교육은 일정기간 동안 당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당사가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 비정기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귀하에게 (7일)전에 장소와 시간, 교육내용을 정하여 서면이나 전화, 모바일상의 문자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5. 귀하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 교육 및 훈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귀하는 입점하는 마트가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메리디움』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체결 후 귀하에게 별지로 제공)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귀하가 인테리어 비용 등의 개설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 분	착 수 금	잔 금
금 액	총 공사비의 50%	나머지 금액
지 급 시 기	공사 시작 하루 전	공사 완료 후 즉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기지급금

구 분	정기지급금
지 급 대 상	(주) 보 화
금 액(천원)	매출액의 5.5%(VAT 포함) (할인 기간의 매출액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 급 기 한	매월 말일

② 광고·판촉 분담금

구 분	광고·판촉 분담금
지 급 대 상	(주) 보 화
금 액(천원)	당사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안분 합니다.
지 급 기 한	p31 참조
반 환 조 건	광고·판촉행사를 미실시한 경우
반환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③ 지식재산권 변경 시 비용 분담

구 분	지식재산권 변경 시 비용 분담
지 급 대 상	현재 미지정
금 액(천원)	추후협의

④ 점포환경 개선비용

구 분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 급 대 상	현재 미지정
금 액(천원)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비고	p35 참조

⑤ 지연이자

구 분	지연이자
지 급 대 상	(주) 보 화
금 액(천원)	년 20%
비고	귀하는 금전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 는 한 그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년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구입요구 품목의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구매를 대행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필수 구매 품목을 지정하여 귀하로부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수령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 독 항 목	내 용	시 기
고객서비스 상태관리	고객서비스 상태 점검	년 2회
품질기준 및 상품관리	당사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상품 점검	
재고관리	실재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점검	
회계처리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 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각종 설비 및 기기관리	각종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 된 후 연장 (갱신, 재계약 포함) 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갱신 가맹비로 금 오백오십만원(₩5,500,000 / VAT 포함)**을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갱신 가맹비는 당사와 귀하 간 합의를 통하여 지급 기한 및 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는 원활한 가맹사업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양수인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3. 잔여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가. 당사는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 귀하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사용권의 권원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나. 당사는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진정성과 적법성 및 대항력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라. 당사는 귀하에게 지식재산권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포함)하여 귀하에게 사용권을 부여 할 것입니다.

마.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 당사는 가맹사업을 중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사유(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 제외)로 가맹사업을 중단 할 경우 당사는 즉시 귀하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할 것입니다.

나. 귀하는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 할 경우 당사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중도 합의 해지(가맹계약서 제33조 제4항 참조)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 양도인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메리디움』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과정에서 귀하가 당사에 부담하여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당사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당사에 입점하는 마트와의 양수도계약에 관한 제반절차에 대하여 대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대행수수료로 **금 칠십칠만 원 (₩770,000)(VAT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양수인의 부담

① 잔여 계약기간을 승계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귀하의 잔여계약기간만을 승계합니다.

② 신규 가맹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최초 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잔여계약 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와 신규가맹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의 공통사항

양수인은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와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당사는 귀하에게 계약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이하 종료일이라 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 당사의 영업표지와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철거하여야 하며, 영업은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2. 전 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 퇴점 후 해당 위치의 모든 영업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귀하가 전 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철거 및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입점한 마트의 동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제1항의 경우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당사는 영업의 중지 및 영업표지를 철거했다는 증거를 귀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영업지역에서 게재 중인 지역광고 등의 경우 만료일 전에 자진 철거·회수하여야 합니다.
5. 당사는 귀하에게 종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잔존 채무액·손해배상액(이하 채무액이라 합니다.)을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고 귀하는 정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채무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입점하는 마트에 보관된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귀하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메리디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원·부자재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체결 후 별지로 제공)

귀하가 아래 표에 기재된 물품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 받기로 한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업자로부터 물품의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1) 설비 등의 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상품 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2023년 기준 모든 가맹점이 주요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당사가 가맹점을 납품한 주요품목의 공급가격을 추산할 수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용역·설비

· 상품 · 원/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품	제 한 내 용 및 조 건	위 반 시 책 임
귀금속류	1. 귀하는 당사의 사전 허가 없이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검수 받지 아니한 타사 제품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2. 귀하는 장물 또는 밀수품 취급 및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거래 등으로 매장의 신용이나 명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3. 귀하는 불량 또는 가짜 제품의 판매 등으로 입점하는 마트 측과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귀하는 입점하는 마트 측이 정한 영업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상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사유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의 허가 없이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 이외의 타인에게 제공 · 판매 · 대여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당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 · 판매 · 대여 하는 경우 상품 공급 중단 사유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품	권 장 가 격(단위: 원)
귀금속류	당일 공시(경제지 및 시세 단말기)되는 권장판매 가격의 ±5%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은 귀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판매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시	
	가맹본부	계열회사
준보석(18k, 14k) 등 주얼리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메리디움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 정 기 준	설 정 방 법
해당마트 내로 한정	가맹계약서에 해당 마트 주소 기재

3) 영업지역을 재조정 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입점하는 마트의 매장 운영계획에 의거 매장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귀하는 임대차 계약에 의거 이에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입점하는 마트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귀하가 부담합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해상 사항 없음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100%		-	-

☞ 2023년 12월 기준 [메리디움] 영업표지의 경우 가맹점 외 타 채널을 통한 매출액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100%	-

☞ 당사는 가맹점 외 온라인 자사몰 및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메리디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입점하는 마트의 계약 종료로 재계약이 되지 아니 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입점하는 마트의 임대차 계약기간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가맹사업 운영의 특성상 귀하는 당사에 다른 상권으로의 입점 및 잔여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간 만료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는 귀하가 계약의 종료로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 거절 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가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귀하가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귀하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당사의 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당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乙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계약 종료 사유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1.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3.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5.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의 일반해지

-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1.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 후 (3개월)이 지나도 영업개시를 못하는 경우
2. 乙이 제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甲의 영업표지 등을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乙이 제4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되지 아니 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乙이 제4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 없이 乙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5. 乙이 제8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지급금을 (2회)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
6. 乙이 제9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되기 전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제품과 기타 설비 등을 처분하지 아니 하는 경우
7. 乙이 제10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8. 乙이 제10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 한 자를 점포관리자로 근무 시키는 경우
9. 乙이 제10조제6항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 하는 경우
10. 乙이 제11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판촉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
11. 乙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6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
12. 乙이 제11조제5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 한 경우
13. 乙이 제11조제7항 규정을 위반하여 홍보·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아니 하는 경우
14. 乙이 제13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15. 乙이 제13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 없이 설계·시공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6. 乙이 제13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설비 등을 교체 보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
17. 乙이 제14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귀금속 KS 표준안」에 따른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甲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乙이 제1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타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경우
19. 乙이 상품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20. 乙이 제1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1. 乙이 제16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 없이 지정하지 아니 한 상품이나 검수되지 아니 한 상품을 매장에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22. 乙이 제16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귀금속 KS 표준안」에 준하여 표기하고 순도를 갖춘 제품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乙이 제16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불량 또는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4. 乙이 제16조제5항 규정을 위반하여 장물 또는 밀수품을 취급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25. 乙이 제16조제6항 규정을 위반하여 甲의 사전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된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26. 乙이 제16조제7항 규정을 위반하여 『메리디움』 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甲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7. 乙이 제1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28. 乙이 제17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 없이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9. 乙이 제1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 없이 乙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甲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30. 乙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작성·유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31. 乙이 제20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매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 보고 또는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32. 乙이 제20조제6항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33. 乙이 제20조제8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
34. 乙이 제21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35. 乙이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36. 乙이 제22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로 유출하거나 비밀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37. 乙이 제24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매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38. 乙이 제2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연속하여 또는 (1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하는 경우
39. 乙이 제3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40. 乙이 제36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하거나 대리경영하게 하는 경우
41. 乙이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거나 도난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
42. 乙이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또는 다른 사유로 (5회) 이상 고객 컴플레인을 받는 경우
43. 乙이 _____ 측이 정한 영업규칙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4. 乙이 _____ 측에 보고하여야 할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 하여 _____ 측으로부터 즉시 해지 당한 경우
45. 乙이 상품판매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한 경우

② 귀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계약해지 일로부터 (1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당사에게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1회)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당사가 본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영업표지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가맹사업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점사업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당사가 일방적으로 상품의 공급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경우
3.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공급을 (3일) 이상 중단한 경우

③ ① 및 ②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나) 계약의 즉시해지

① 당사는 귀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 귀하가 당사가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합니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② 귀하는 당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가 파산 신청한 경우
3. 당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당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5. 당사 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당사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①과 ②의 경우 당사와 귀하는 서면으로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계약기간 중 법 개정 또는 당사와 귀하의 합의로 계약은 수정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양당사자의 기명날인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에서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개인사정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 당사는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승인 또는 거절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는 승인을 거절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귀하의 잔여계약기간만을 승계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제4항의 경우 귀하가 당사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당사에 입점하는 마트와의 양수도 계약에 관한 제반절차에 대하여 대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당사에 대행수수료로 **금 칠십칠만 원 (₩770,000)(VAT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귀하가 계약기간 중 당사로부터 다음 각 호 1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본 계약에 따른 운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1. 법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3.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6. 제4항의 양수인 또는 제6항 제1호의 새로운 대표자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①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상속인의 가맹점운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귀하가 사망한 경우에 직계상속인이 귀하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사에 승계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입점하는 마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승계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사망일로 소급하여 종료됩니다.
3.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됩니다.

②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임대하거나 대리경영하게 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중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메리디움』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가 계약기간 중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외에 별도로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귀하는 영업일 및 휴무일, 영업시간에 대하여 입점하는 마트가 별도로 정하는 임대매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연속하여 또는 (1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점하는 마트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또한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연속하여 또는 (1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영업을 중지 할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업 시 간	영 업 일 수	비 고
입점하는 마트와 동일	입점하는 마트와 동일	문의 : 관리팀(031-238-6002)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이 근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을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검에는 고객센터 상태, 회계처리, 각종 설비관리, 시스템상태, 공문서 또는 홈페이지 상 공지되는 경영방침의 준수여부가 포함됩니다.
2. 당사는 귀하의 「귀금속 KS 표준안」 준수여부를 검사·감독 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제1항의 경우 필요시 회계 장부, 영업장부 등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당사의 직원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당사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와 귀하의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 고 성 격	분 담 비 율		분 담 절 차	비 고
		본 사 부 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상품광고와 가맹점 모집 광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광고비의 50%	광고비 50%는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순매입액에 따라 그 비율을 안분	광고 계획 공고→가맹점의 광고 참여 여부 결정→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대 중 매 체 광고,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 음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가맹점 행사참여결정→행사 종료 후 최종 부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방법·시기·횟수 등에 관하여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판촉활동을 할 경우 경품, 기념품 및 팸플릿, 전단지, 리플릿 등의 서비스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품은 당사로부터 승인된 물품으로 하며 그 외의 물품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 영업개시의 경우 효율적인 가맹점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판촉행사는 당사와 사전에 협의 후 귀하가 직접 진행합니다.

귀하는 매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점하는 마트가 시행하는 홍보·판촉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 귀하는 계약 기간 중 알게 된 당사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의 종료 후 (1년 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당사로부터 대여 받거나 제공받은 자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귀하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아래의 규정된 손해배상에 정액 외에 별도로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乙이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18조(경업금지 의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평균 월로열티의 24배(24개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乙이 제28조(계약의 일반해지) 또는 제29조(계약의 즉시해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평균 월로열티의 24배(24개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乙이 계약종료 후 甲의 영업표지를 침해하는 경우 乙은 계약 종료일의 익일부터 **1일당 사십만원(₩400,000)씩** 계산하여 甲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甲의 요구에 의해 또는 乙의 요구에 의해 본 계약이 중도에 합의 해지되는 경우 甲 또는 乙은 타방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재계약도 포함) 후 5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의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평균 월로열티의 24배(24개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2. 계약체결 (재계약도 포함) 후 5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乙의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평균 월로열티 x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⑤ 乙이 상품 판매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 퇴점 등의 패널티가 발생한 경우, 乙은 퇴점 등의 패널티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 제4항제1호의 경우 乙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여 평균 월로열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乙의 인근 『메리디움』 타가맹점 5개를 기준(5개가 안 되는 경우 개점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하고, 1개의 가맹점도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평균 월로열티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월로열티를 산정한다.
- ⑦ 乙은 甲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10평 기준, VAT포함)

구 분	내 용	소 요 기 간	소 요 비 용
합계		45일 내외	-
개설상담 신청	- 가맹점 개설 상담 신청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1~3일	없 음
점포조사	- 상담 후 점포 조사	1~3일(숙고기간에 병행)	없 음
숙고기간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숙고 기간	14일(자문 시 7일)	없 음
점포 확정 최종 협의	- 점포 확정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1일	점포 임대 비용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	- 계약체결 - [우리 은행]에 가맹금 예치	1일	합의된 가맹비
실측 및 견적 산출	- 점포 인테리어 실측 - 견적 산출	3~5일	P14 참조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20~26일	
인·허가 및 교육이수	- 인·허가 신청 및 사업자 등록 - 개점 전 교육 이수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p37 참조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각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p>(가맹본부가 환경개선을 요구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판 교체 비용 2.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p>※ 입점된 마트에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p>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지급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3. 분할 지급 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②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비용부담 제외 사유	<p>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p>

2. 판매촉진 행사시 인력 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요청 시】	
대상 및 내용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절 차	1.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2.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비 용 부 담	- 가맹본부 부담
비 고	- 문의 : 관리팀(031-238-6002)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대상 및 내용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절 차	1.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2.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3.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비 용 부 담	- 가맹점부담(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비 고	-문의 : 관리팀(031-238-6002)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의 지원내역

해당없음

IX.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메리디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교 육 방 식	기 한	비 고
신 규 교 육	상품관리 전산 교육 고객응대 교육 PDA교육	실 습 교 육 집 단 강 의	오픈 3일전	필 수 교 육
보 수 교 육	고객응대 교육	실 습 교 육 집 단 강 의	연 1회	매 년 이 수 (필 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메리디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 소 시 간	비 용(단위: 원)	비 고
신 규 교 육	약 3~5 일	무 료	최초 계약 시 이수
보 수 교 육	추 후 공 지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가맹점관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 및 가맹점관리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 시 당사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매장명	소재지
1	-	-	-
2	-	-	-
3	-	-	-
4	-	-	-
5	-	-	-

2023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	-

2023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2023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31-238-600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phoyarn.com>]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지 1. 『메리디움』 가맹본부 (주)보화 2023~2021년 재무제표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지 2. 『메리디움』 점포 예정지 주변의 가맹점에 관한 정보 ◆

가맹본부『메리디움』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전화번호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_____ 지역

NO.	상호	대표자 이름	소재지	전화번호

